

- 반부패 · 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안)

-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권고 사항 중
우리공사 실정에 맞는 사례를 선정,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최우수기관으로의 도약기반을
마련코자 함.

□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1394호(2014. 4. 14)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권고』

□ 주요 개정내용

-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1항, 제7조의 “범죄행위”를 “범죄 및 부패행위”로 하고 제2
조 “공사 임·직원”을 “공사 임·직원(퇴직자포함)”으로 한다.

제3조 1항 중 “공사 임·직원의 범죄혐의”를 “공사 임·직원(퇴직자포함)의 범죄
및 부패혐의”로 한다.

제 3조 2항, 제5조 1항, 제6조의 “범죄혐의”를 “범죄 및 부패혐의”로 하고 제4조
1항의 “범죄”를 “범죄 및 부패”로 한다.

제4조 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장은 범죄 및 부패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공금횡령·유용 또는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
액)이상인 경우
2. 공금횡령·유용 또는 금품·향응수수 전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5.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거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이 내부징계기준에 의거 해임이상인 경우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1항의 “범죄행위자”를 “범죄 및 부패행위자”로 하고, 제5조 2항의 “범죄 혐의자”를 “범죄 및 부패혐의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등) 징계처분결과를 공사홈페이지(외부적발에 의한 경우), 사내게시판(내부적발에 의한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 부서 의견조회
 - 1차 : 문구수정 및 의견반영[감사팀-2285호(2014. 7. 31)]
 - 2차 : 의견없음[감사팀-2431호(2014. 8. 19)]
- 사 규 시 행 : 부서장 결재 후